변경대비표(일반 및 자펀드)

1. 대상 펀드:

no.	펀드명	변경 사항	결산	변동성
1	미래에셋차이나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(주식)	1), 4), 5)	0	0
2	미래에셋퇴직플랜차이나인덱스 40 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1), 4), 5)	0	0
3	미래에셋 BRICs 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1), 5), 6)	1	-
4	미래에셋 BRICs 업종대표장기주택마련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1), 4), 5), 6)	-	-
5	미래에셋 BRICs 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1), 4), 5), 6)	-	-
6	미래에셋 EasternEURICs 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1), 4), 5), 6), 7)	1	-
7	미래에셋아내사랑글로벌이머징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1), 4), 5), 6)	-	-
8	미래에셋퇴직플랜 BRICs 업종대표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1), 4), 5), 6)	-	-
9	미래에셋퇴직플랜 BRICs 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1), 4), 5), 6)	1	-
10	미래에셋퇴직플랜 G1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1), 4), 5)	1	-
11	미래에셋퇴직플랜 G2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1), 4), 5)	-	-
12	미래에셋퇴직플랜 G3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1), 4), 5)	1	-
13	미래에셋퇴직플랜 G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1), 4)	-	-
14	미래에셋퇴직플랜 G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1), 5), 6)	-	-
15	미래에셋퇴직플랜 G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1), 4)	-	-
16	미래에셋퇴직플랜 G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1), 4)	-	-
17	미래에셋퇴직플랜이머징업종대표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1), 4), 5), 6)	-	-
18	미래에셋퇴직플랜친디아업종대표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1), 4), 5)	-	-

2. 변경 사항:

- 1) 모투자신탁 추가
- 2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3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변경사항 반영
- 4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문구 변경
- 5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- 6) 법 개정사항 반영
- 7) 가입자격 변경
- 3. 효력발생예정일: 2022년 5월 19일 (목)
- 4. 변경 내용:
 - 1) 모투자신탁 추가
 - 미래에셋차이나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(주식)

- 미래에셋퇴직플랜차이나인덱스40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	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	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
종류 및 명칭 등)	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	- <신설>	- 미래에셋차이나 H 인덱스증권모투자신
		<u>탁(주식)</u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6. 집합투자기	[모자형 구조]	[모자형 구조]
구의 구조	- <신설>	- 미래에셋차이나 H 인덱스증권모투자신
		<u>탁(주식)</u>
제 2 부. 8. 집합투자기	- <신설>	- 미래에셋차이나 H 인덱스증권모투자신
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		<u>탁(주식)</u>
대상		
제 2 부. 9. 집합투자기	<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>	<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>
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	- <신설>	- 미래에셋차이나 H 인덱스증권모투자신
침 및 수익구조 (1) 투		<u>탁(주식)</u>
자전략		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위
		하여 자산총액의 60% 이상을
		HSCEI(Hang Seng China Enterprise
		Index)"의 지수의 구성종목에 투자합니다.
		또한, 투자 목적 달성을 위해 추적오차율
		최소화를 추구합니다. (보수차감전, 세전
		수익률 기준)
		※ 비교지수: HSCEI(Hang Seng China
		Enterprise Index)
제 2 부. [제 2 부 별첨	- <신설>	- 미래에셋차이나 H 인덱스증권모투자신
1] 모집합투자기구에		<u>탁(주식)</u>
관한 사항		

- 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)
- 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장기주택마련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
- 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
- 미래에셋EasternEURICs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
- 미래에셋아내사랑글로벌이머징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
- 미래에셋퇴직플랜BRICs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퇴직플랜BRICs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
- 미래에셋퇴직플랜G1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퇴직플랜G2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
- 미래에셋퇴직플랜G3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퇴직플랜G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
-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
-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퇴직플랜이머징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퇴직플랜친디아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	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	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
종류 및 명칭 등)	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	- <신설>	- 미래에셋인디아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
		<u>(주식)</u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6. 집합투자기	[모자형 구조]	[모자형 구조]
구의 구조	- <신설>	- 미래에셋인디아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
		<u>(주식)</u>
제 2 부. 8. 집합투자기	- <신설>	- 미래에셋인디아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
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		<u>(주식)</u>
대상		
제 2 부. 9. 집합투자기	<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>	<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>
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	- <신설>	- 미래에셋인디아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
침 및 수익구조 (1) 투		<u>(주식)</u>
자전략		① 인도 주식에 60% 이상 투자합니다.
		② 주식은 개별 기업의 가치 및 위험 등에
		대한 내재적 가치 분석에 의한 운용 전략
		과 경제 환경 등에 대한 거시 경제 분석에
		의한 운용 전략을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운
		용합니다.
		※ 비교지수: MSCI India Index
제 2 부. [제 2 부 별첨	- <신설>	- 미래에셋인디아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
1] 모집합투자기구에		(주식)
관한 사항		

3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변경사항 반영

펀드명	변경 전 등급	변경 후 등급	변경 전(%)	변경 후(%)
미래에셋차이나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(주식)	2	2	21.42	23.53

미래에셋퇴직플랜차이나인덱스 40 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4	4	7.97	8.77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	------	------

4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문구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12. 나.	①상장주식	①상장주식
집합투자재산의	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	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
평가방법 (1) 평		(해외상장 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)
가방법		
	③장내파생상품	③장내파생상품
	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	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
	이 발표하는 가격	이 발표하는 가격 (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
		전날의 가격)
	⑦집합투자증권	⑦집합투자증권
	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	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
	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. 다만, 상장된	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. 다만, 상장된
	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	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
	가	가 <u>(해외 상장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</u>
		<u>종시가)</u>

5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부. 2. 집합투	<신설>	바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: 해당사항
자기구의 종류		<u> 없음</u>
및 형태		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조(용어의 정 의)	<신설>	- "고난도금융투자상품"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
제53조(고난도 금융투자상품)	<u><신설></u>	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 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.

6) 법 개정사항 반영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8. 가. 투	-채권	<삭제>
자대상	<중략> <mark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mark>	
	<생략>	
	-자산유동화증권	
	<중략> <mark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mark>	
	<생략>	
제2부 8. 나. 투	-동일종목투자 (예외)	-동일종목투자 (예외)
자제한	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	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
	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	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
	투자할 수 있다.	투자할 수 있다.
	나. <중략>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	나. <삭제>
	<중략> <mark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</mark>	
	<u>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u> , <생략>	
	<중략> <mark>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</mark>	
	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	
	또는 <생략>	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3조(자산운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
용지시 등)	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</u>	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
	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	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
	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	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
	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15조(투자대	-채권	<삭제>
상자산 등)	<중략>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<생략>	
	-자산유동화증권	
	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	
제17조(운용 및	2. <생략>	2. <생략>
투자 제한)	나. <중략>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	나. <삭제>
	<중략>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	
	<u>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u> , <생략>	
제42조(집합투	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	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
자업자 및 신탁	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	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
업자의 변경)	<u>다.</u>	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 총회 결의를
		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
		변경할 수 있다.

②~③ <생략>	②~③ <생략>
	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^{*}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규약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

7) 가입자격 변경

펀드명	변경 전	변경 후
종류 C-I	법인세법 시행령 제 17 조의 2 의제 8 항의 규	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(외국법령에 의한 것
	정에 따른 기관투자자, 국가재정법에 의한	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 포
	기금,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	함),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
	합투자기구 (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	업규정 제 1-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
	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) 또는 이	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상
	투자신탁 수익증권을 100 억원 이상 매입한	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, 100 억원 이상 매입
	개인이거나 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	한 개인이거나 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

미래에셋자산운용㈜